

# 평생교육원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원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칙 제68조에 의거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59(대림3동 665-10)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 (연수과정)** 평생교육원에는 전문과정(신학교육, 교양교육), 목회신학원, 학점은행제, 최고영적지도자과정, BITS전문아카데미, 실용교양, 기타 과정을 둔다. <개정 2022.1.11.>

## 제2장 조직

### 제6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원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8.>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교직원)**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8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9조 (당연직위원)** 본교의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정하고 평생교육원장을 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④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⑤ 규정의 수립과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⑥ 교원 임용 및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학사운영 및 교원 인사

### 제13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용성 및 주당 시간수의 배정에 따라 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전공 및 세부과정에 따라 수업일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업연한)** 본원의 전공 및 세부과정별 수업연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학사 일정에 따라 해당기간에 모집한다.

**제16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선발방법)** 학습자 선발은 설치과정의 목적성을 고려하여 과정별로 선발방법을 달리 한다.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의 목적성을 감안하여 일부과정(전문과정, 목회신학원 경우)에 한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제19조 (지원절차)**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목회신학원 경우)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류전형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목회신학원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편성표<별지 1>와 같다.

② <삭제>

### 제21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 제22조 (강의배정)

① 본교 전임교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임교원 또는 강사의 주당 1인 수업시간은 18시간 이내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 제23조 (시간계정)

① 강사료의 산정기준은 시간계정으로 한다.

② 시간계정은 주당 담당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4주 단위로 계정을 산출한다. 다만, 단기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동강좌는 담당교수 수로 나누어 시간계정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외래교수 위촉)** 외래교수는 개강 1개월 이전에 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의 2 (전임교원 공개채용)**

- ① 평생교육원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과 신규 교원 임용 내규에 따르되,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을 준용하여 서류심사, 전공심사, 강의평가, 면접심사를 1단계로 통합할 수 있다.
- ② 본원의 공개채용 전임교원 임용자격 학위조건은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본원의 특성화 차원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2년의 연구실적 연수와 2년의 교육경력 또는 총 4년 이상(8학기)의 교육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정할 수 있다.
- ③ 신규임용의 경우에 법인 정관 제39조를 준용하여 첫해 1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여 이후부터 재계약하되, 초빙공고 또는 계약 시에 전공 개설 승인 등 조건부 임용을 정한 경우에는 조건 미 충족 시 1년 임용으로 임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원의 원칙과 내규 외의 나머지 공개채용 절차는 법인 정관과 본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의 3 (전임교원 특별채용)**

- ① 본원의 특별채용 전임교원 임용자격 조건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 외에 본원의 특성화 차원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목 관련 경력자로 할 수 있다.
- ② 특별채용 절차는 법인 정관과 본교 인사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의 4(교원 임용)**

- ① 본원의 전임교원 임용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의 정관에 따라 임용한다.
- ② 신규 전임교원 임용은 첫 1년 임용 평가 후 잔여 2년 임용(1년+2년)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임용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 ③ 재임용 평가에는 교원의 업적, 강의 평가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④ 개설되지 않은 전공의 교원인 경우에는 제24조의 2(전임교원 공개채용) 제3항에 따라 전공 개설 미승인 시에는 1년 임용으로 임용계약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평점)** 본원의 과정 중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은 성적평점을 4.5만점으로 하고, 성적평점환산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점수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59이 하

**제25조의 2(출석관리)**

- ① 각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5조의 3(휴강 및 보강)**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

보강계획서를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 4(공결처리)**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공결계)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질병 등의 사유로 격리된 경우
6. 평생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 학교의 공적인 행사 참여
7.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5조의 5(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제25조의 6(강의평가)**

-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②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다.
- ④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25조의 7(시험의 구분)**

-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및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하며, 학습과정의 내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의 8(추가시험)**

- ①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 시험인 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③ 정기시험 결시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의 승인 하에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의 9(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 ①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 ②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 10(성적평가 기준)

- ①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 ~ 30%, B는 30% ~ 40%, C 이하는 30% ~ 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정기 시험(중간 또는 기말 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⑤ 성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5조의 11(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 ①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 ②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이수 신청한 학습과정이 폐강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재이수 학습과정을 수강 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이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 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성적을 취소한다.

#### 제25조의 12(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①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③ 담당교·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의 13(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 ①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원장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의 14(부정행위 조치)

- ①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시험 또는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제25조의 15(장애 학습자)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에 시험시간을 1.5배 더 부여한다.

### 제26조 (수료 및 수료증교부)

-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기간을 수학한 후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제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수료식에 참가하게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27조 (수강생 지도)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자치회)

-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서기 각 1인을 둔다.

### 제28조의 2 (동아리 활동)

- ① 본원은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지역사회봉사와 기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② 학습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학습자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0조 (장학금)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본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31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 제6장 회계

제32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년도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본원 예산편성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예산편성에 따른다.

제34조 (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학습비
- ②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보조금
- ③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 ④ 기타 수입

제35조 (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36조 (준용) 본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보칙

**제37조(준용)** 본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① 본원 문서관리는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의 [별표2]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 부 칙

1. 이 원칙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원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원칙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원칙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원칙은 201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